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790

발의연월일: 2023. 9. 27.

발 의 자:최기상·정성호·김정호

홍성국 · 진선미 · 장경태

기동민 · 임호선 · 강병원

신정훈 · 김용민 · 김의겸

박상혁 • 우원식 • 김성환

신현영 • 허종식 • 이동주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함. 이에 따라 각 광역지 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적립액으로 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및 운용하고 있음.

그런데 매년 수해 피해가 집중되는 여름철 등 특정 시기에 지방자 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의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고려할 때, 각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재난안전 주무 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, 현재 실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 2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금 운용 현황을 제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률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이 법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통해 공유하고 있는데,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실무적으로 시행 중이므로 이를 법률상 명시하여 행정안전부 등이 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부족 여부등을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출받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,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제68조제3항 등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에"를 "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"로, "관리에"를 "관리, 운용 현황 제출, 적립 및 집행 현황 입력·확인 등에"로 한다.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2회 이상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을 입력하여야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재난관리기금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(시·도가설치한 기금의 경우 해당 시·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·군·구를 말하고, 시·군·구가 설치한 기금의 경우 해당 시·군·구가 속한시·도를 말한다)의 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68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) | 제68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) |
| ① · ② (생 략) |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2 |
| | 회 이상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|
| |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 |
| | 출하여야 한다. |
| <u><신 설></u> |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4 |
| | 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 |
| | 통신체계에 재난관리기금의 적 |
| | 립 및 집행 현황을 입력하여야 |
| |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|
| | 재난관리기금과 관련이 있는 |
| | 지방자치단체(시·도가 설치한 |
| | 기금의 경우 해당 시·도 관할 |
| | 구역 안에 있는 시·군·구를 |
| | 말하고, 시・군・구가 설치한 |
| | 기금의 경우 해당 시・군・구 |
| | 가 속한 시·도를 말한다)의 |
| | 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. |
| ③ <u>제1항 및 제2항에</u> 따른 재 |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|
| 난관리기금의 용도·운용 및 | |
|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| 관리, 운용 현황 제출, 적립 |
| 령으로 정한다. | 및 집행 현황 입력・확인 등에 |